

[] 우수문화프로젝트
[] 우수문화사업자

지정서

신청인	업체명	
	대표자 성명	
지정내용	사업 분야	
	사업내용 요약	
지정번호		

귀하가 제출한 ([] 우수문화프로젝트, [] 우수문화사업자)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([] 우수문화프로젝트, [] 우수문화사업자)로 지정되었으므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